

# 학생회 및 계열(학과) 대표 선거규정

개정 2019.05.22., 2024.02.01., 2025.05.08.

## 제1장 총 칙

### 제1조 (선거권)

선거권자는 1·2·3·4학년 재학생으로 해당학기 등록을 필한 자에 한해서 부여한다.

### 제2조 (피선거권)

피선거권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- ① 재학생 중에 해당학기의 등록을 필하고 전(前)학기 성적이 계열(학과)에서 B학점 (80점) 이상인 자. (단, 학생회장, 부회장의 피선거권은 2·3년제 계열(학과)는 졸업 학년 전 학기 등록을 필한 재학생으로 4년제 학과는 3학년 전 학기 등록을 필한 재학생으로 한다.)<개정 2013.10.7., 2014.12.16., 2024.02.01.>
- ② 품행이 방정하고 지휘 통솔력이 있는 자.
- ③ 금고이상 형사처벌 또는 학칙을 위반하여 정학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.
- ④ 출석상황이 양호한 자.
- ⑤ 본교 및 전적 대학의 자치기구 간부를 역임하지 않은 자.<신설 2013.10.7.>
- ⑥ 산업체 위탁생, 계약제 학과는 제외한다.<신설 2013.10.7.>
- ⑦ 위①항의 성적에 미달 되어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계열(학과) 대표는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할 수 있다.<신설 2025.05.08.>

### 제3조 (선거방법)

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직선제로 한다.

- ① 정·부 학생회장의 선거 : 본교의 피선거권을 가진자에 한하여 복수 후보시 전체 유권자의 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, 단일 후보시에는 투표자의 과반수이상 찬성을 득한 자를 당선자로 한다.
- ② 대의원(부)의장의 선거 : 대의원 과반수이상 참석자중 다득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하고, 단일 후보시에는 과반수이상 참석자중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.
- ③ 동아리연합회장 선거 : 등록된 개별 동아리 회장단의 과반수이상의 참석자중 다득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.
- ④ 계열(학과) 과대표의 선거 : 각 계열(학과) 졸업 학년에서 직접선거로 선출하며 다득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함.

### 제4조 (임기)

- ① 총(부)학생회장, 대의원(부)의장, 동아리연합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- ② 임원이 궐위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.

제5조 (재선거)

- ① 단일 후보 시 투표자의 과반수이상 찬성을 득한 자를 당선자로 한다.
-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무효가 될 때
- ③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기타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

제6조 (보궐선거)

- ① 불신임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선한다.
- ② 정(부)회장이 모두 궐위되면 학생회칙 제12조에 따라 보선한다.

제7조 (선출시기)

선출 시기는 매학년도 2학기 중에 선출한다. 단, 2학기 중에 실시가 불가능 할 때에는 그 사유가 해제되는 최단 시일 내에 실시한다.

제8조 (선거관리비용)

선거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학생회비에서 지출한다.

##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

제9조 <삭제 2019.05.22.>

제10조 <삭제 2019.05.22.>

제11조 <삭제 2019.05.22.>

제12조 <삭제 2019.05.22.>

## 제3장 선거운동

제13조 (선거운동)

- ① 선거운동은 해당 입후보자의 등록을 필한 직후부터 행할 수 있다.
- ② 선거운동 비용(홍보용)은 학생자치회비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입후보자는 위원회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. 이를 위반할 때에는 위원회는 입후보 또는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.

- ③ 위원회는 입후보 마감 후 입후보자의 활동소견 발표회를 갖는다.
- ④ 합동연설은 1회 실시하고 연설기간과 장소는 위원회에서 통보한다.
- ⑤ 선거관리위원은 선거 운동원이 될 수 없다.
- ⑥ 기타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.

#### 제14조 (벌칙)

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피선거권을 박탈하거나 당선무효를 정한다.

- ① 제반 제출서류를 부당하게 작성한 자
- ② 선거관리위원, 입후보자 및 유권자에 대하여 폭행, 협박, 유언비어 등을 유포한 자
- ③ 부정한 선거운동을 한 자
- ④ 위원회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
- ⑤ 기타 선거를 방해하거나 위법, 부당한 행위를 한 자

#### 제15조 (사전선거운동 제한)

사전선거운동 또는 선거기간 중 면학분위를 저해하거나 공갈, 협박, 허위사실 유포 및 선거를 방해하는 제반행위를 한 자에게는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에 처 한다.

## 제4장 투표 및 개표

#### 제16조 (투표)

- ① 투표용지는 위원회에서 작성 배부하고 대학에서 제공하는 기구로 기표 한다.
- ② 선거인은 학생증을 제시하고 선거인 명부와 대조 날인후 기표용지를 받아 지정된 장소에서 기표하여 투표한다.
- ③ 개표 시 개표소 내에는 위원회 위원과 참관인 이외에는 출입을 할 수 없다.
- ④ 투표시간은 당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한다. (총(부)학생회장 선거에만 해당)<개정 2014.12.16.>

#### 제17조 (참관인)

공정한 투표 및 개표를 위하여 각 후보는 각 투표, 개표소마다 각각 1인씩 지명하여 참관한다.

#### 제18조 (개표)

- ① 개표준비가 완료되면 선거관리위원장의 개표선언으로 시작한다. 단, 참관인 입회하에 개표를 시작한다.
- ② 참관인은 개표사무에 종사 할 수 없으며 개표에 영향을 주는 언행은 일체 금한다.
- ③ 개표는 투표 종료 후부터 개표의 종료 시까지로 한다.

제19조 (무효표)

다음 각 호의 경우는 무효표로 처리한다.

- ① 교부한 투표용지 이외의 것
- ② 기표가 되지 않은 것
- ③ 투표용지에 2인 이상이 기표된 것
- ④ 선거관리위원장의 검인이 없는 것
- ⑤ 기표를 확인할 수 없는 것
- ⑥ 규정이외의 표시가 있는 것

제20조 (무효)

선거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24시간 이내에 위원회에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여 제소할 수 있다.

제21조 (재선거)

위원회에서 당선이 무효로 결정시 5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한다. 단, 규칙위반으로 당선된 후보는 재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.

제22조 (당선인)

- ① 위원회는 최고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고 총장의 인준을 받아 이를 공고한다.
- ②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후보의 연장자순으로 당선을 결정한다. 단, 총(부)학생회장 선거에 한함.

제23조 (기타)

본 선거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결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1985년 04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1993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제3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1994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제4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1998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제5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02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제6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04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3년 10월 0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5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6.12.08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6년 12월 0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7.11.28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7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9.05.22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9년 05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4.02.01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4년 02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5.05.08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5년 05월 08일부터 시행한다.